##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088

발의연월일: 2020. 8. 20.

발 의 자:이원택・양정숙・한병도

윤미향・유동수・정청래

양이원영・황운하 • 전용기

전재수 · 박성준 · 김경만

장경태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 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 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와 가축분뇨관리기본계 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조합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가축분 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 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24조제1항).

#### 법률 제 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를 "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위하여 필요하면"을 "위하여"로,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	
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	
하기 위하여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	
염의 실태 등을 <u>조사(이하"가</u>	<u>조사(이하 "가축</u>
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분뇨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u>있다</u> . <u>&lt;후단 신설&gt;</u>	<u>한다</u> . 이 경우 시·도지사, 특별
	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는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를 가
	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
	<u>야 한다.</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	①
협조합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	
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u>위하</u>	<u>위하</u>
여 필요하면 공공처리시설(농	<u> 여</u>
협조합의 경우에는 자원화시설	

로	한정	]한다.	이하	같다	)을	<u>설</u>
<u>치</u>	할 수	- 있다	<u> </u> . 다	만, 농	·협조	합
0]	공공	'처리서	시설을	설치	하려	는
경-	우에님	는 환경	병부령	으로	정하	는
공	공의	목적여	에 해	당하는	: 경	우
로	한정	한다.				

2	$\sim$	7	(생	략)
<u> </u>		· · ·	\ U	1 /

<u>설치하여야</u>
한다
,
② ~ ⑦ (현행과 같음)